

제 3 4 1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08. 29.(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31
제안일자	2023. 08. 17.
회부일자	2023. 08. 2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권광택 의원 외 41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의과대학 유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의과대학 유치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8조).
-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

4.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심사완료(입법정책담당관)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해당부서 의견 : 없음(교육협력과)
-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교육협력과)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 08. 22. ~ 08. 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0호)
- 의견제출 : **없음**

7.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열악한 경상북도의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경북 소재 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유치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하였습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명, 최근 10년간 의료인력 증감 0.14명,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46.98명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활동의사와 간호사의 증감 현황을 보면, 전국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붙임자료 1, 2 참조).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내 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추진방향, 시책개발,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관·산·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규정한 것이며,
- 안 제5조는 의과대학 유치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의과대학 유치 계획수립과 더불어 유치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

치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위원회 자문사항, 회의, 간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과 운영을 규정한 것입니다.
- 부칙은 조례의 시행과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교육부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 조례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1)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확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2)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 제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이 적절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의과대학 추진과정에서 도내 시군 또는 대학교 간의 의과대학 유치 의사가 중복될 경우 의견 조율과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 및 경쟁력 있는 의과대학 유치 방안 등 시행과정에서의 면밀하고 세부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자료 1]

최근 10년간 시도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

(단위 : 명)

지역	2013		2022		13년 대비 22년 증감 현황	
	활동 의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활동 의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활동 의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전국	90,710	1.77	112,321	2.18	+21,611	+0.41
서울	27,055	2.67	32,704	3.47	+5,649	+0.8
대구	5,114	2.04	6,192	2.62	+1,078	+0.58
광주	3,112	2.11	3,751	2.62	+639	+0.51
세종	96	0.79	496	1.29	+400	+0.5
대전	3,246	2.12	3,773	2.61	+527	+0.49
부산	7,152	2.03	8,356	2.52	+1,204	+0.49
인천	3,936	1.37	5,375	1.81	+1,439	+0.44
경남	4,614	1.38	5,716	1.74	+1,102	+0.36
경기	17,089	1.40	23,893	1.76	+6,804	+0.36
전북	3,279	1.75	3,694	2.09	+415	+0.34
울산	1,499	1.30	1,808	1.63	+309	+0.33
강원	2,403	1.56	2,778	1.81	+375	+0.25
전남	2,861	1.50	3,172	1.75	+311	+0.25
제주	940	1.58	1,214	1.79	+274	+0.21
충북	2,186	1.39	2,542	1.59	+356	+0.2
충남	2,766	1.35	3,242	1.53	+476	+0.18
경북	3,362	1.25	3,615	1.39	+253	+0.14

[자료] 보건복지부

[붙임자료 2]

최근 10년간 시도별 활동간호사 증감 현황

(단위 : 명)

지역	2013		2022		13년 대비 22년 증감 현황	
	활동 간호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활동 간호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활동 간호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전국	134,748	2.63	254,400	4.95	+119,652	+2.32
대구	8,189	3.27	15,465	6.54	+7,276	+3.27
광주	5,430	3.69	9,939	6.95	+4,509	+3.26
서울	35,179	3.47	61,759	6.55	+26,580	+3.08
부산	11,547	3.27	20,804	6.27	+9,257	+3.00
대전	4,570	2.98	8,233	5.69	+3,663	+2.71
인천	5,476	1.90	13,271	4.47	+7,795	+2.57
경남	8,470	2.54	15,965	4.87	+7,495	+2.33
울산	2,950	2.55	5,350	4.82	+2,400	+2.27
전북	5,073	2.71	8,770	4.96	+3,697	+2.25
전남	5,849	3.07	9,309	5.12	+3,460	+2.05
경기	22,158	1.81	50,908	3.75	+28,750	+1.94
강원	4,122	2.67	7,011	4.56	+2,889	+1.89
세종	93	0.76	1,008	2.63	+915	+1.87
충남	3,774	1.84	7,614	3.59	+3,840	+1.75
경북	6,722	2.49	10,495	4.04	+3,773	+1.55
충북	3,148	2.00	5,352	3.36	+2,204	+1.36
제주	1,998	3.36	3,147	4.64	+1,149	+1.28

[자료] 보건복지부